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제2-1판) 배포 알림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63(2022. 3. 13.)와 관련됩니다.
2.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검사치료체계 지침 제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팩스로비드 등 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3.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지침(제2-1판)을 수정하여 배포하니, 시군구 및 관할 의료기관에 재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운영지침 관련 Q&A 수정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제2-1판)
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제2-1판)
3. 주요 Q&A_합본(제2-1판)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장), 경기도지사(질병정책과장), 경기도지사(사회재난과장), 부산광역시(시민방역추진단장), 부산광역시(안전정책과장), 대구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대구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대구광역시(사회재난과장), 인천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인천광역시(사회재난과장), 광주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광주광역시(자치행정과장), 대전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울산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울산광역시(재난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감염병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재난관리과장), 강원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강원도지사(재난대응과장), 충청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 전라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 전라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안전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 제주특별자치도(보건건강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재난대응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행정사무관

이지연

의료지원팀장

전결 2022. 3. 14.

양정석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2. 3. 14.)
중앙사고수습본부-1217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853 팩스번호 044-202-1972 / lime82@korea.kr / 비공개(5,6)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